

2016 단기완성 민법 핵심지문총정리 - 정오표

페이지	(기존내용)	(수정내용)								
p.118 (문99)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사시 2012><법행 2012등 빈출>	[해설] (○) → (×)								
p.123 (문115)	매도인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시 2010><법행 2015>	[문제] 매도인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시 2010><법행 2015>								
p.124 (문119)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원칙</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적용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④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원칙	적용x	④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박스] ④ 무능력자 → 제한능력자
원칙	적용x									
...	...									
...	④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	...									
p.139 (문161)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원9급 2015>	[문제]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법원9급 2015>								
p.144 (문175)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사시 2002, 2005, 2012, 2013> <법원9급 2011>	[해설] (×) → (○)								
p.176 (문285)	2005년 10월 7일 오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25년 10월 7일 오전 0시에 성년이 된다.	[문제] 2025년 → 2024년								
p.333 ~ p.334 (문123)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법원9급 2015>	[문제]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법원9급 2015>								
P.336 (문131)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사시 2009><법행 2012>	[해설] (○) → (×)								
P.398 (문104)	회사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를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등기한 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회사가 대표이사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	[전체 삭제]								

	으로 하여 채무자를 회사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한 경우,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는 회사 채무라고 본 사례																	
P.442 (문11)	甲은 미성년인 자녀의 재산을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할 때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하면 되나, 자가 금지산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할 때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甲은 미성년인 자녀의 재산을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할 때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하면 되나,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아버지의 재산을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할 때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P.448 (문30)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문제] 밑줄 삭제																
P.460 (문21)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사시 빈출><법행 2012등 빈출>	[해설] (×) → (○)																
P.496 (문145)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을 받지 않고 일부만의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의 대위만이 생긴다.	[해설] (○) → (×)																
P.500 (문158)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법행유사 2011>	[해설] (×) → (○)																
P.512 (문194)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甲으로부터 매수한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에 甲이 乙의 잔대금지급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피대위권리인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다. <사시 2013>	[해설] (×) → (○)																
P.564 (문58)	주채무가 불가분급부인 때와 공동보증인이 각각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때(연대보증)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으나, 각 보증인간 연대의 특약이 있을 뿐인 때(보증연대)에는 분별의 이익이 적용된다.	[해설]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부종성</th> <th>보충성</th> <th>분별의 이익</th> </tr> </thead> <tbody> <tr> <td>연대보증</td> <td>○</td> <td>×</td> <td>×</td> </tr> <tr> <td>보증연대</td> <td>○</td> <td>○</td> <td>×</td> </tr> <tr> <td>공동보증</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부종성	보충성	분별의 이익	연대보증	○	×	×	보증연대	○	○	×	공동보증	○	○	○
	부종성	보충성	분별의 이익															
연대보증	○	×	×															
보증연대	○	○	×															
공동보증	○	○	○															
P.584~ P.585 (문25)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이고,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는 없다. <법원9급 2015>	[해설] (○) → (×)																